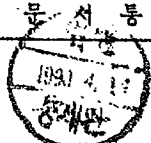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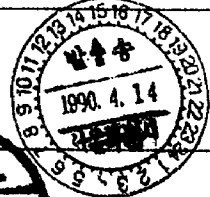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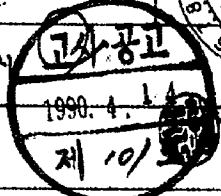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(전화: 773-3674)

시행상
특별취급

분류기호 문서번호	문제35300-167		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	장		
수신처 보존기간		행			
시행일자	'90.4.				
보조기관	문화관광국장 전결	협조기관	경부담당관 심사관		
	문화재국장 7k				
	문화재1기장				
기안책임자	연익암 (최광수)	발송인			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  			
제목	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고시 (제 1 안) : 내부일제				
1. 시장 방침 제 899 호 ('90. 4. 11)와 관련입니다.					
2.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결과와 시장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					
지방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.					
구. 지정내용 :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목록					
0. 지정일자 : 1990. 4. 11					
문		화			
재		구			
의		의			
종	지정번호	명	소재지	면적	소유자
유형문화재	제71호	구제일은행본점	중구 충무로1가 53-1	2,157.4㎡	(주)제일은행

실장인

나. 근거법규 : 문화재보호법 제83조의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위원회

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울 지정함.

참 부 : 고시(안) 1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 : 문화재 센터국장

참 조 : 문화재 1과장

제 목 :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통보

1. 우리시 유형문화재 제71호 구 제일은행 본점과 본점 다음부속의

지방문화재의 보호구역울 지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1안 "가"항 이거시행. 끝.

(제 3 안)

수 신 : 종구청장

참 조 : 문화청보실장

제 목 : 서울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통보

1. 문화 35300-4505('90. 2. 16)호와 관할임.

2. 위호에 의한 우리시 유형문화재 제71호 구 제일은행 본점의 문화재

보오구와 지정 신청인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

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재 보오구임을 지정된 사항임을 증명하오니,

3. 실존 증명서 및 실용 영수부사에 증명하여 현지정부에 기록 영입

할 것이며 향후 문화재 보호법칙의 단정함을 기하기 바랍.

가. 지정내용 : 제1안 "가"항 이기시행. 끝.

(제 4 안)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서울시 지방 문화재 보오구와 지정 영보

1.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

의거 지방문화재 보오구임을 지정된 사항임을 증명하오니 영부의 참모하시기 바
랍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1안 "가"항 이기시행. 끝.

수신처 : 세종국,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도시개발과, 계획관리과, 건축지도

과, 지적과

(제 5 안)

수신 : 영무척장함
참조 : 영무담양함
제목 : 산보계재 의뢰
1.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규정을 지정하였기
재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산보에 계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첨부 : 고시문 2부. 끝.
(제 6 안)
수신 : 영보관
제목 : 시보계재 의뢰
1.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규정을 지정하였기
재산소유자 및 관리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계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
첨부 : 고시문 2부. 끝.
(제 7 안)
수신 : 종로구 공평동 100 (주) 제일은행 대표 송보일 귀하

제목 : 서울특별시 지방민화재 보호구의 지정 영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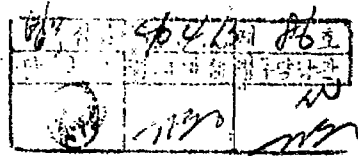
1. 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형민화재 제71호 구 제철연양

본점의 보호구역을 민화재 보호단 책임부담 서울특별시 민화재 보호조례 제9조

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 압력드립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1안 "가"항 이기시행. 끝.

고 사 (안)


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10/호

서울특별시 지방 민화권 보호구역 지정

본 지정은 서울특별시 지방 민화권 보호구역 지정 조례 제10조 제1항에
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민화권 보호구역 지정하에 서울특별시 지방 민화권
 보호구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
1990. 4. 14

서울특별시 장

서울특별시 지방 민화권 보호구역 지정

지정 구역			보호 구역		
소재지	면적	소유자	소재지	면적	소유자
유영민화권	제 71 호	제임영	영구 종무로 1가 53-1 필지	2,157.4 ^{M²}	(주) 제임영

기안용지

(전화: 773-3674)

시행상
특별취급

분류기호 문서번호	문재35300-		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		
수신처 보존기간		899 결재 1990.4.11 시랑			
시행일자	'90.3.				
보조 기관	부서장 <i>Lee</i>	협 조 기 관			문서통계
	문화관광국장 <i>Kim</i>				
	문화재과장 <i>Kim</i>				
기안책임자	연익홍 <i>Yoon</i>				발송인
성 수 신 참 조	내 부 결 제		발 신 명 의		
제 목	구 제일은행 본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				
1. 우리시 유명문화재 제71호 구제일은행 본점과 관련 입니다.					
2. 위 문화재 소유자 (주)제일은행으로부터 갈부외 남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(인근도로 포함 3,037.7 m ²)이 있은바, 제일은행 소유대지 면적 (2,157.4 m ²)으로 조정하여 문화재 외원의 심의회 심의 결과 제일은행 소유 대지 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					
3. 심의회결과와 재개발사업 진행 고백 등 문화재가 위치한 중구 중 부로 1가 53-1 필지만을 동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단점을 기하고자 합니다.					
첨부 : 1. 문화재 위원 검토 결과 1부.					

